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나5420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나54201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4. 1. 15 선고 2023가소8969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8. 29.

판결선고 2024. 10. 17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. 1. 15. 선고 2023가소8969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3. 6.경 피고의 동생인 C와, 형사사건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원고가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, 500만 원 중 200만 원은 2023. 6. 8. C 계좌로 송금하였으며, 나머지 300만 원은 C의 요청에 따라 2023. 6. 13.경 피고에게 지급하였다.

나.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와 C가 거주하던 주택의 체납 월세 명목으로 D(E공인중개사)에게 지급하고, 나머지 1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였으나, 위 사실을 알게 된 C는 피고와 D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결국 D으로부터 월세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. 또한 C는 원고에게도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C에게 2023. 6. 29.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10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월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는데, 그 중 C가 D으로부터 다시 받아간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납 월세의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피고와 C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, 피고가 위 1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한 행위 또는 그 이후 위 돈을 사용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이

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(원고로서는 C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, 이후 C의 요구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일 뿐이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,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수영, 판사 김경진, 판사 김용태